



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240호

2022. 8. 19.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21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908호 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5
- 삼척시 공고 제909호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 삼척시 공고 제919호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21
- 삼척시 공고 제919호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9
- 삼척시 공고 제92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37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2 - 121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16.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오분길 119-12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v.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내역

구분	순번	총전 주소 개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부여 1건, 폐지 2건						
폐지	1	강원도 삼척시 오봉길 119-12(오봉동)			20220816	건물멸실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주택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오봉길 113(오봉동)			20220816	건물멸실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주택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48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의재로 3235-19		20220816	신규부여	20090604	자연 지명명칭 반영(문의재)	

삼척시 공고 제2022-908호

「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삼 척 시 장

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삼척 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행복지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 다. 삼척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5조)
- 라. 행복 증진 교육 및 홍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6일까지 삼척시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기획조정실
- 2) 전화 : 033-570-3715
- 3) 팩스 : 033-570-3131
- 4) 전자우편 : 458italy@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시는 시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실행계획
3.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4.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실태 조사의 실시·활용계획
5.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행복지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시민의 행복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시장은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수준 측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행복수준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9조(삼척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수준 활용에 관한 사항
5. 행복 격차 해소 및 행복수준 향상 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복 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행복 증진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 증진 교육을 확산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행복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추진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시장은 제8조 행복지표의 개발 및 행복수준 측정, 제16조 행복 증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국내외 기관이나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명: 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909호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6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적립 의무 조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금의 근거법률 조항 변경(안 제1조)
 - (현행) 제18조의3
 - (변경) 제18조의7
- 나.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삭제(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5일까지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 2) 전화 : 033-570-3752
 - 3) 팩스 : 033-570-3130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28.>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획을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 지방기금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책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붙임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919호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농기계 임대와 관련된 지역농업인 불편을 개선하고, 대형농기계 임대신청 자격 여부 확인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규칙에서 사용하는 임대신청요건에 관한 사항 개정
 - '삼척시에 소재한 농경지 경작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 ⇒ '삼척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 임대료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 '시장'이 ~ 결정하고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 대형 농기계 임대 자격 확인 조항 신설

- 임대농기계의 자격증 또는 조종면허 소지 여부 확인(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더) 및 관련 교육 이수 확인(콤바인, 트랙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미래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추가 및 삭제, 기타 보완할 내용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1길 16-36 삼척시청 미래농업과
(농기계 부서)
 - 전화 : 033-570-4594
 - FAX : 033-570-4177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 법령 1부.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임대대상자는 삼척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고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으로 한다”를 “임대대상자는 삼척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으로 하며 사용지역은 삼척시 관내로 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항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결정하고~”를 “임대료의 결정 또는 변경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로 한다.

제7조(사용 허가 및 교육) 제2항제4호 “임대농기계의 자격증 또는 조정면허 소지 여부 확인(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더) 및 관련 교육 이수 확인(콤바인, 트랙터)” 조항을 신설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대대상자) 임대대상자는 삼척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u>경작하고</u>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임대대상자) ----- ----- 경작하거나 ----- ----- 농업인으로 하며, 사용지역은 삼척시 관내로 한다.
제5조(임대료 결정) ①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결정하고 이를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임대 기종 변경(신규·폐기농기계 발생 등) 및 임대료 변동시 이를 즉시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결정 등) ① 임대료의 결정 또는 변경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를 시보 ----- ----- ----- -----.
②~④ (생 택)	②~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생 택) ②항 1.~3. (생 택) 4.(신 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항 1.~3. (현행과 같음) 4. 임대농기계의 자격증 또는 조정면허 소지 여부 확인(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더) 및 관련 교육 이수 확인(콤바인, 트랙터)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택)	

[붙임 3]

관 계 법 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⑤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3호)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②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돋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및 심의위원회 설치(‘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운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임대 가능
- * 를 네별경영체육성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도서지역 등 임대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우 3일 이상 임대 할 수 있음
-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반일단위 임대농기계 운용 가능
- * 임대사업소 휴무 등으로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일자 감면 등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하여야 함
 - * 다만 주소지와 농경지가 다른 경우 임대 우선순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되 주소지와 경작지가 동일한 경우만 임대 운영하는 것은 금지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156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실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회동 확정
 -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업부와 관련 심의회와 통합운영 가능
 - * 사업 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6년 개정)'를 활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업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을 심의대상에서 제외

상기반
(공동)

1-5
농
기
계
지
원

[붙임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919호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농기계 임대와 관련된 지역농업인 불편을 개선하고,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로 효율적인 임대사업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임대신청 요건)에 대한 사항 개정
 - 주소와 경작지 ⇒ 주소 또는 경작지, 사용지역은 삼척시 관내로 한다.
- ‘임대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 시장이 결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취약계층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외에 장애인 추가
- 농기계임대 사업계획 심의조항 신설
 - '삼척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계획 적합 여부 심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미래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추가 및 삭제, 기타 보완할 내용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1길 16-36 삼척시청 미래농업과 (농기계 부서)
 - 전화 : 033-570-4594
 - FAX : 033-570-4177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 법령 1부.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삼척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중 “사용자”란 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를 “사용자”란 시에 주소 또는 경작지를 두고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하며, 사용지역은 삼척시 관내로 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 “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를 “임대료의 결정 또는 변경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를 제14조(시행규칙)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농기계임대 사업계획 심의) 농기계임대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등을 ‘삼척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3.(생략)</p> <p>4.“사용자”란 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대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p> <p>제9조(임대료결정 및 사전납부) ①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p> <p>②(생략)</p> <p>제11조(임대료의 감면 및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p> <p>2.~4.(생략)</p> <p><신 설></p> <p>제13조 (생략)</p>	<p>제3조(정의) ----- -----.</p> <p>1.~3. (현행과 같음)</p> <p>4. “사용자”란 시에 주소 또는 경작지를 두고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하며, 사용지역은 삼척시 관내로 한다.</p> <p>제9조(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① 임대료의 결정 또는 변경은 「농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임대료의 감면 및 면제) ----- ----- -----.</p> <p>1.----- ----- -----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 -----</p> <p>2.~4.(현행과 같음)</p> <p>제13조(농기계임대 사업계획 심의) 농기계 임대 사업계획 적합 여부 등을 ‘삼척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p> <p>제14조(현행 제13조와 같음)</p>

[붙임 3]

관 계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⑤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3호)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②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돋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및 심의위원회 설치('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운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임대 가능
- *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도서지역 등 임대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우 3일 이상 임대 할 수 있음
-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반일단위 임대농기계 운용 가능
- * 임대사업소 휴무 등으로 농기계 반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일자 감면 등 임대료를 관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하여야 함
 - * 다만, 주소지와 농경지가 다른 경우 임대 우선순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주소지와 경작지가 동일한 경우만 임대 운영하는 것은 금지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156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시 · 군 · 구

-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종 확정
 -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업분야 관련 실의회와 통합운영 가능
 - * 사업계획 수립 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6년 개정)」를 활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업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장관기본
(공동)1-5
농
기
계
지
원

[붙임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 - 9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1호선)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삼척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1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2022.08.19. ~ 2022.09.02.) 열람하시고,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19.

삼 척 시 장

1. 공의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1호선)사업」
- 나. 사업의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성남동 38번지 일원
-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B=35m, L=1,024m
- 라. 사업 기간 : 2020년 ~ 2025년
- 마. 사업 시행자 : 삼척시장
-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강원도 춘천시 사우4길 18)

2. 편입 토지 및 물건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1호선)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삼척시 성남동 (32필지)	38, 39, 39-1, 199-4, 36-2, 36-3, 36-4, 36-5, 37-1, 30 30-3, 30-4, 30-5, 30-7, 30-8, 30-9, 35, 35-1, 35-2, 35-3 35-4, 35-5, 35-6, 31, 31-1, 31-4, 31-5, 31-6, 31-10, 31-11, 31-12, 26-3
삼척시 남양동 (104필지)	259-1, 298, 298-1, 297, 297-1, 294, 294-1, 295, 296, 296-1, 296-2, 286, 286-1, 286-3, 286-4, 286-5, 285, 285-1, 285-3, 285-4, 285-5, 285-6, 283-20, 282-1, 282-4, 281-1, 281-2, 281-3, 280, 279, 278-1, 278-3, 278-6, 276-1, 165-1, 165-2, 323, 166-1,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6-10, 166-11, 166-12, 166-17, 166-18, 167-4, 167-5, 167-7, 167-9, 167-11, 167-19, 167-23, 168-1,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8-23, 168-25, 169-1, 169-2, 169-3, 169-6, 169-7, 169-10, 169-11, 169-12, 169-13, 169-14, 169-15, 169-16, 169-17, 169-19, 169-20, 169-21, 169-22, 169-23, 169-28, 178, 177-1, 177-2, 177-5, 177-6, 176-1, 176-3, 176-4, 176-5, 176-7, 176-9, 322, 153-1, 153-2, 152-2, 166-14, 166-13, 278-2, 278-4
삼척시 사직동 (4필지)	279-3, 292-2, 292-3, 284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나.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
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기반사업부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사우4길 18(우편번호 : 24226)
- 전화 및 팩스번호 : ☎ 033-240-9665, FAX : 033-244-8623

나. 삼척시 건설과

-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 전화 및 팩스번호 : ☎ 033-570-3488, FAX : 033-570-3141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08.19. ~ 2022.09.02.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 각 1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가. 보상대상 물건조사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주소·거소·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 마.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기반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240-9665, FAX:033-244-8623]

2022년 8월 19일

사 업 시 행 자 : 삼 척 시 장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